

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관리

- 사전투표관리관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58조(사전투표)제6항제1호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한 다음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- 우체국 인계과정에는 후보자별 1인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이 동행합니다.
- 우체국은 전국 3,500여 개소의 사전투표소로부터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회송용봉투를 인계받아 분류한 다음 선거인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선관위로 배달하며, 회송용봉투 이동경로는 등기번호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.
-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부터 배송받은 구·시·군선관위는 (정당추천)위원의 참여하에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,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.
- 투입 완료 후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우편투표함 투입구를 재봉인하고 보관장소 출입구를 폐쇄·봉인합니다.
-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시마다 정당추천위원이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투표함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

우편투표함 보관장소

- 우편투표함은 CCTV 및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며, 보관상황을 녹화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.
- 또한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, 시·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됩니다.